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03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영배 · 김종민 · 복기왕
정준호 · 조정식 · 민병덕
한병도 · 박수현 · 조승래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법률 제 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치와”를 “위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 ② (생 략) ③ 대검찰청의 <u>위치와</u>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위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고,</u> ----- -----. ④ (현행과 같음)